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6년 11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회계제도 개혁 T/F
제 1 차 Kick-off 회의 개최
- 회사감사(감사위원회) 및 회계
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기준 신설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
계·감사·공시위원회 정식 가입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세무정보

- 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 한·인도조세조약 발효
- 싱가포르와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서명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개요

(1) 회의 개요

금융위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2016년 8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시간: 07:30 ~ 09:00
- 장소: 정부종합청사 3층 회의실
- TF 구성: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 금감원(감독당국), 회계, 법률 전문가 등
- 공동 논의: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주요 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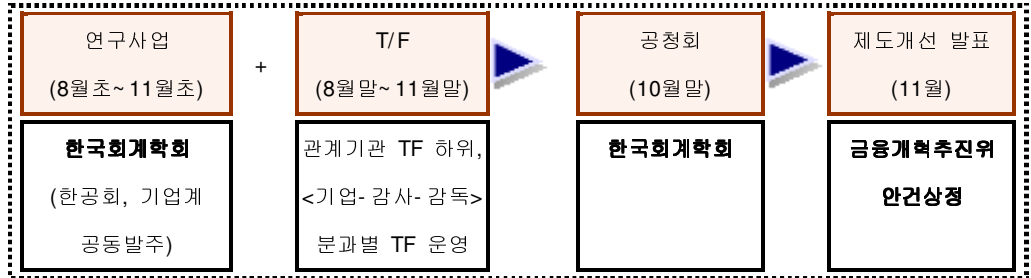
(2) 주요 논의 내용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논의함
 (전문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 필요
 (기업계) 회계 인력 전문성 및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합리적 조정을 제안
 (한공회)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금감원)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 검토
 -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 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업분과, 감사분과, 감독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 (*) 한공회와 기업계는 공동으로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사업을 위탁

(3) 향후 계획

향후계획

-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매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
- **“TF ↔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 (11월)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

주요검토과제

(4) 회계제도 개혁 TF 및 연구사업 주요 검토과제 (안)

- 기업 분야
 - 회사의 임의적 회계처리 가능성 최소화 방안
 - 내부감사의 기능, 역할, 책임 강화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 회사 경영진의 인식전환 방안
 - 기타 분식회계 재발방지 방안
- 감사 분야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방안 (감사인 선임, 감사 환경 등)
 -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간 균형성 확보 방안
 - 감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
 - 감사인의 책임성 강화 방안 (핵심감사제 등)
 - 기타 부실감사 최소화 방안
- 감독 분야
 -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식회계, 부실감사 제재수준 및 방식 개선방안
 - 회계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공시 등 시장기능을 통한 감시강화 방안
- 기타 주제
 -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방안
 - 회계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회사 감사(감사위원회) 및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회사감사 및 회계
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2016.7.18.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부터 적용)을 통하여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음

- 감사(감사위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분식회계 등 발생시 해임권고 조치
-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 발생시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조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계·감사·공시위원회 정식 가입
IOSCO 가입

우리나라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1) 산하 회계·감사·공시 정책위원회(Committee 1)에 정식 가입(*2)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회계, 감사 및 공시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감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공고해짐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은행:BCBS, 증권:IOSCO, 보험:IAIS) 중 하나로 전세계 115개 국가의 증권감독기구 등으로 구성

(*2) 2016.6.28. Committee 1은 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한다고 공식 통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추진배경

- 추진 배경
지방회계법 제정(법률 제14197호, '16. 5.2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예정일자 : '16. 11. 30.)

구성체계
주요내용

- 구성 체계 : 총칙, 결산, 수입, 지출, 현금과 유가증권 등 총 7장 74개조
- 주요 내용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출납처리기한 보완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 외에 수입, 지출의 회계처리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된 국가 및 시·도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공개 등
결산검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감사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함. 아울러, 감사위원이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생, 품위손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회계업무 취약분야 주기적 점검 실시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과정을 내부통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이 회계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회계관계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의 예외사항 규정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및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수당 중 일 . 숙직비 지급,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 조의금 . 축의금 지급, 공무원여비 지급 등으로 제한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구분		과세대상 금액
주택		인별 6 억원 초과 (1 세대 1 주택은 9 억원 초과)
토지	종합토지	인별 5 억원 초과
	별도토지	인별 80 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 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이 5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5 백만 원 초과 1 천만 원 이하 : 5 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 1 천만 원 초과 : 세액의 100 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6 년 12 월 15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 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7 년 2 월 15 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 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 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원
-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 개월 유예합니다. (법인의 경우 2015 년 연간 매출액이 500 억 원 이하).
 - ⇒ 2017 년 2 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2017.3.15.(수)까지 납부.
-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 신청할 경우 추가 6 개월(최장 9 개월)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징수유예·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인도조세조약 발효

2016년 10월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비준동의안이 2016년 9월 7일 국회를 통과해 9월 1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한·인도조세조약은 1986년 처음 제정돼 발효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2005년 5월 이후 9년에 걸쳐 인도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 협정 개정이 타결됐고 지난해 5월 서명을 마쳤습니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한국의 조세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조세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인도 조세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거나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하고, 인도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로 함.
- (이전가격 상호합의) 이전가격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 확대(현행 10% → 100% 면세)를 통해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 (이자·사용료 제한세율 인하)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현행 15% → 10%)를 통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납부하는 세금 감소
- (주식양도차익 과세권 배분)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현행거주지국 독점과세)하여 5%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
-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 (징수협조)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싱가포르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2016년 10월 11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이름, 주소, 계좌정보, 잔액, 소득 유형 등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후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며,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은 2019년부터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양국은 1981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20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하여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 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 119조 제 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 국조-0284, 2016. 8. 26.).
-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시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가능 여부
 -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관계사 근무기간을 반영하였다면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기간이 포함되는 것임(서면-2106-원천-4671, 2016. 8. 11.).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영,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